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자동차 열처리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3) 배흉부 경부좌상, 4) 외상후 증후군”으로 치료종결된 후 정신 장해가 남은 경우

(91-610호 91. 11. 26.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조○○

주소 : 울산시 동구 하정동

원처분 청 :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자동차 주식회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7. 29.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자동차(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 9. 25.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3) 배흉부 경부좌상 4) 외상후 증후군”으로 양산 신경정신 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6. 30.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

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13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정신 장해로 인하여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 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1. 6. 조○○)
2. 답변서(1991. 11. 9.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7. . 조○○)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7. 29.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10. 30.)
6. 진단서 사본(1991. 6. 30. 양산신경정신병원)
7. 소견서 사본(1991. 7. . 원처분청 자문의)
8. 특진 소견서 사본(1991. 7. 9. 동강병원)
9.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자동차(주) 소속 열처리공으로 근무하

여 오다가 1988. 9. 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뇌좌상, 2)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3)배흉부경부좌상, 4)외상후 증후군”으로 양산신경정신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6. 30. 치료종결되어 양산신경정신병원 담당 주치의는 “정서둔마, 의욕감퇴, 고도의 기억장애, 자발성의 감퇴, 두통, 현훈, 불면증, 이명, 정신집중 곤란, 신경쇠약 증상, 자극 감응성 항진 정서장애 등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나 동강병원 특진 소견서상 “두통, 불면증, 기억장애, 집중장애, 불안, 초조, 가슴답답, 의욕감퇴, 충동조절 결여, 손발 마비감 등으로 향후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뇌좌상 후유로 두통, 불면증, 집중장애, 손발 마비감 등으로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장해가 남음” 등의 소견을 종합 판단컨대 청구인의 경우 정서둔마, 기억력 장애, 의욕감퇴, 정신 집중 곤란 및 충동조절 결여 등 중등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로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7급 13호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

○○조선공업(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요추염좌, 2)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애가 남은 경우

(91-726호 92. 1.27. 취소)

재 결 서

재 심 사 청 구 인 성 명 : 강○○

주 소 : 광주시 서구

원 처 분 청 :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

원 처 분 을 받 은 자 성 명 : 상 동
주 소 : ”

피재근로자 성명: 상동
주소: "
소속: ○○조선공업 주식회사

주 문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1. 9. 19.자 “강○○”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적용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9. 19.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조선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 11. 20.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요추염좌, 2)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으로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8. 7.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해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9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통통으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

가 장해등급 제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는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2. 24. 강○○)
2. 답변서(1991. 12. 26.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8. . 강○○)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9. 19.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10. 30.)
6. 진단서 사본(1990. 5. 14., 1991. 8. 7.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7. 소견서 사본(1991. 9. . 원처분청 자문의)
8.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조선공업(주)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 11. 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요추염좌, 2)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으로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8. 7. 치료 종결되었는바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담당 주치의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 진단 소견서상 “화학적 수핵용해술후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있고 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155도, 후굴 167도, 좌굴 165도, 우굴 160도, 좌회선 25도, 우회선 30도”의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요추부 통통 및 좌하지 방사통 등의 신경증상이 남아 있고 요추부 운동이 제한되나 운동제한의 경우 통통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뿐 청구인은 추간판 제거술 또는 추궁절제술 등의 수술없이 화학적 수핵용해술(주사요법)만을 시행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는 배부인부조직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제한이 아니므로 운동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나 다만 신경 증상의 경우 통통으로 인하여 척추운동이 1/2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로는 강도의 통통 때문에 어느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